

직장예비군연대 운영규정

- 제정 : 1988. 05. 01.
- 개정 : 1988. 01. 01.
- 개정 : 1999. 11. 01.
- 개정 : 2010. 04. 01.
- 개정 : 2011. 10.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5조(법률 제2017호(68. 5. 29)) 및 동 시행령 제5조, 제13조와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운영지침(문교부 81. 5. 12)에 의거 학생예비군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장예비군 연대설치·조직·편성과 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책임한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제) 본교 예비군 연대는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원)에 재학(직)중인 교직원, 학생 예비군에게 적용한다.

제2장 임무·조직편성

제4조(임무) 본교에 편성된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
2. 매년 지시된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에 대한 의무의 이행
3. 분기 1회 예비군 업무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비군 연대본부에 문의한다.

제5조(예비군의 조직편성) ① 본교 직장예비군은 향군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예비군의 조직 대상자중 본교 및 대학원에 재학(직)중인 교직원, 학생예비군 및 고용인으로 한다.

- ② 중대, 소대, 분대는 대학별, 학과별, 학년별로 편성 지휘체제를 유지한다.
- ③ 지휘관(자)은 학과장 추천에 따라 총장 명의로 연1회 임명하되 학적변동시에는 교체 임명한다.
- ④ 학과별 조교는 본교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에 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직장의 장을 대행한다. (예비군실무편람 5-7 라항에 의거 소집통지서 전달자로 본다)

제6조(대원신고) ① 본교 및 대학원에 재학(직)중인 학생예비군 및 교직원은 입학(임용), 복학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본교 직장예비군 연대본부에 출두하여 예비군 대원신고(전입)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재학(직)중 휴학(휴직), 제적, 졸업(사직)등의 학적변동이 있을 때와 거주지 이전이 있을 때 예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교 직장예비군 연대본부에 출두하여 예비군 대원 신고(전출) 및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재학(재직)중 학적변동(사직) 사항이 발생한 때 대학원 교학과 및 학적과, 교무과 및 총무과에서는 학적변동(사직) 7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예비군 연대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예비군 교육훈련

- 제7조(교육훈련) ① 예비군 교육훈련은 당해연도 교육훈련 지시(육본, 3군사령부, 지휘관리부대)에 의거 반드시 교육훈련에 참석 의무 부과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의 전달은 아래와 같으며 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학과별 조교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구두연락)를 받으면 지체없이 대상자(학생)에게 연락 할 책임을 진다. (예비군실무편람 5-7 “라”항에 의거 소집통지서 전달자로 본다)
 2. 교육훈련 개시9일전까지 교육훈련 소집통지서(구두연락)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과장 확인 후 서면으로 예비군연대 본부에 통보한다.
 3. 예비군연대 본부는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학과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수원 대학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4장 예비군부대 지원육성

- 제8조(지원육성) ① 향군법 제14조의 3, 통합방위법시행령 제9조, 대통령 훈령 제28조 제9조 규정에 따라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본교내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본교는 예비군 부대 및 예비군 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1. 예비군 부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
 2.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수송, 중식비 일부, 강사료, 교보재 등)
 3. 예비군 정기 감사 수검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5장 동원운영

- 제9조(동원) ① 작전동원은 국가동원령 발령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②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는 병무청으로부터 접수하여 예비군 편성카드 기재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 ③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는 본 규정 제7조 제2항에 의거 교부되며,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수령증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예비군 연대본부에 제출한다.

제6장 벌칙

- 제10조(벌칙) ① 예비군 교육훈련에 무단 불참한 자는 향군법 제15조에 의거 당해연도 지침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 ② 예비군훈련 무단 불참자(2회이상)와 향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된 자는 학과장에게 통보하여 학칙 시행세칙 제13조(시험) 제3항 학점산정에 참고토록 조치한다.

제7장 보칙

-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향군법 및 예비군 실무편람(국방부 09.12.30), 당해연도 교육

훈련지시(육본, 3군사령부, 지휘관리부대)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